

[별표 6] <개정 2008.3.4>

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기준(제18조관련)

구 분	기 준
방사선 또는 방사능 감시 시설	방사선누출 또는 방사능오염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, 방사선누출 또는 방사능오염발생시 경보기능을 할 수 있을 것
방사선 방호장비	방재요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방사선 측정장비, 방사선 방호장비는 충분한 여분을 확보할 것
방사능오염제거 시설 및 장비	방사능재난 등 발생시 방사능오염의 측정 및 제거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할 것
방사선물질의 방출량감시 및 평가시설	방사성물질의 외부 방출량을 산정하고,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험실을 갖출 것
주제어실·비상기술지원실·비상운영지원실·비상대책실 등 비상대응시설	1. 주제어실은 부지 내·외에 초기 비상통보, 방사선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을 것 2. 비상기술지원실은 주제어실 요원이 방사선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하고, 적절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3. 비상운영지원실은 응급보수요원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, 주제어실·비상기술지원실·비상대책실요원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며, 비상대응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 4. 비상대책실은 방사능재난 발생시 비상대응활동을 종합·조정할 수 있을 것 5. 주제어실·비상기술지원실·비상운영지원실·비상대책실 등은 방사선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6. 비상대응시설은 각각의 기능수행에 적합한 공간 등을 확보하고, 운영에 필요한 기기를 갖출 것 7. 비상대응시설은 방사능오염에 대비하여 소개방안을 마련하고 예비시설을 지정할 것
관련기관과의 비상통신 및 경보시설	1. 교육과학기술부,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, 영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과 비상통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

2. 방사능재난 등 발생시 원자력시설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방사능재난 등의 발생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경보 및 방송장치를 설치할 것
3. 원자력시설로부터 반경 2km 이내(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·운영허가를 받은 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)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방사선재난 등의 발생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경보 및 방송장치를 설치 할 것. 다만, 법 제2조제1항제10호 라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